

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

[시행 2022. 2. 18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8호, 2022. 2. 17., 타법개정]

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8845, 8836

I.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

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
- 가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: 정부지원승인 훈련비
- 나. 가목 이외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: 6,000,000원
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
- 가. 장애등급 제1급 ~ 제3급 : 월 800,000원
- 나. 장애등급 제4급 ~ 제9급 : 월 600,000원
- 다. 장애등급 제10급 ~ 제12급 : 월 450,000원
3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: 월 450,000원
4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: 월 150,000원
5.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2. 적용례

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부터 적용한다.

3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